##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81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김준혁·안규백·이기헌

김영환 • 박희승 • 강유정

권칠승 · 김병주 · 문정복

염태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은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 인재의 육성·유치에 중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보다 연봉이나 연구환경이 열악하여 10년간 34만 명의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의대로 몰리는 등 글로벌 인재확보 경쟁에서 낙오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31 년까지 56,000명, 미국은 2029년까지 146,000명의 반도체 산업 인력 부 족이 전망되고 있으며, AI의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반도체 산업 인력 소요 추계는 매년 급증하고 있음. 미국은 작년 기준 2030년까지 67,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망했으나 1년 사이에 인력 부족 전망 치가 2배 이상 늘어남.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대기업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반도체, AI와 같은 전략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규모만을 이유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전직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이에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전문 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법률 제 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2(전략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병무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안보, 국가경제, 전략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③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9조의2(전략산업 병역지정업
	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병무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안보, 국가경
	제, 전략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
	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 관
	런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
	정함에 있어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
	<u>한다.</u>
	③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
	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
	능요원은 제39조제3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
	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
	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
	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선정

<u>된</u>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 <u>할</u> 수 있다.